

의안번호	2212908
의 퇴 인	장철민의원
회 답 일	2025.10.20.
추 계 번호	25D5002

과거사치유재단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법인격)	과거사치유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법인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사업)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1항) 1.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등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및 사료관의 조성·운영·관리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개시결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 지원 3.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교류 4. 과거사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교육사업 5. 과거사 관련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의무규정
		재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8조(국가기관 등과의 협조 등)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고(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이 협력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9조(임원)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제1항)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3조(이사회)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14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함	의무규정
8	안 제15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함 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의무규정
9	안 제16조(출연금)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7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8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2	안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함)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3	안 부칙 제2조(설립준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함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법인격)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설립)	
3	안 제7조(사업)	
4	안 제8조(국가기관 등과의 협조 등)	
5	안 제9조(임원)	
6	안 제13조(이사회)	
7	안 제14조(직원의 임면)	
8	안 제15조(운영재원)	
9	안 제16조(출연금)	
10	안 제17조(기부금품의 모집)	
11	안 제18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2	안 제19조(자금의 차입)	
13	안 부칙 제2조(설립준비)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여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및 사료관의 조성·운영·관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대한 조사 지원 등의 사업¹⁾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²⁾는 재단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기부금품,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출연금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치유재단의 조직규모, 사업 내용에 따른 사업비 등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한 정보가 없어 현시점에서 과거사치유재단의 조직이나 사업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참고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과거사치유재단의 사업과 일부 유사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의 2024년 지출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

-
- 1)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등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및 사료관의 조성·운영·관리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개시결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 지원
 3.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교류
 4. 과거사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교육사업
 5. 과거사 관련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재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 제15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표 1] 한국국제교류재단·동북아역사재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결산현황: 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한국국제교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건비	10,383	7,402	3,714
기본경비	4,249	2,930	1,505
사업비	81,013	5,388	12,728
합계	95,645	15,720	17,947

주: 상기의 결산금액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를 합산한 것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

참고자료

유사 특수법인(재단법인)과 과거사치유재단 비교

구분	한국국제교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거사치유재단
근거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안
소관부처	외교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사업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2013.7.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정책 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 활동	1.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및 사료관의 조성·운영·관리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조사개시결정된 사건에 대한 조사 지원 3.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교류 4. 과거사 관련 문화·학술 조사·연구·교육사업 5. 과거사 관련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임원	이사 9명 이내, 감사 1명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이사 20명 이내, 감사 1명	이사 9명 이내, 감사 1명
기관장	1명	1명	1명	1명
상임이사	2명	1명	1명	정관으로 정함
비상임이사	6명	13명	13명	정관으로 정함
감사	1명	1명	2명	1명
직원				
일반정규직	126명	83명	56명	정관으로 정함
무기계약직	20명	31명	10명	정관으로 정함
2024년 결산	95,645백만원	15,720백만원	17,947백만원	—
인건비	10,383백만원	7,402백만원	3,714백만원	—
기본경비	4,249백만원	2,930백만원	1,505백만원	—
사업비	81,013백만원	5,388백만원	12,728백만원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www.alio.go.kr>)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